

신주발행 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 조에 의거 2025 년 09 월 23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347,500,000 주(1 주당 액면가액 : 100 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채무상환자금,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8 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 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 전일(2025 년 09 월 22 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5년 11월 14일) 전 제 3 거래일(2025년 11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 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 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3) 2 차 발행가액 : 2 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개시일(2025년 12월 19일) 전 제 3 거래일(2025년 12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 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 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 차 발행가액과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5 조의 2 에 의거하여 1 차 발행가액과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 차 발행가액, 2 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예정) : 2025 년 11 월 14 일

6. 신주의 배정방법 :

(1)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주식의 20.0%에 해당하는 69,500,000 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 : 신주배정기준일(2025 년 11 월 14 일 예정) 18 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 주당 0.4096482585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 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1 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 주당 0.2 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 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 시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 사 6 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인수 의무주식수"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iii)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2 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250,000 주(액면가 100 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청약기간 (예정) :

- (1)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25 년 12 월 19 일(1 일간)
 (2)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 2025 년 12 월 19 일, 2025 년 12 월 22 일(2 일간)
 (3)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5 년 12 월 24 일, 2025 년 12 월 26 일(2 일간)

8. 청약사무 취급처 :

- (1) 우리사주조합 : NH 투자증권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NH 투자증권의 본·지점
 (3) 구주주 중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NH 투자증권의 본·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NH 투자증권의 본·지점

9.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10. 납입기일(예정) : 2025 년 12 월 30 일

11. 신주 배당 기산일 : 2025 년 01 월 01 일

12. 주금납입장소 : 주식회사 하나은행 강남역금융센터

13. 대표주관회사 : NH 투자증권 주식회사

14.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 년 9 월 16 일)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제 3 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9 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고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합니다.

(3) 당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i)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ii)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리인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단,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합니다.

(4) 당사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고, 최소한 5 거래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장하여야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2025년 12월 04일 ~ 2025년 12월 10일 (5영업일간)

(5)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i)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장내·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하여 청약합니다.
- (ii)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의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직접 청약 가능하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리인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15. 상장예정일 : 2026년 1월 12일

16. 기타

-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기타 본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